

## 이천시 해외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(안)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년월일 : 1996. 6.  
제출자 : 이천시장

### □ 제안이유

- 국제교류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해외에 명예국제협력관을 위촉하고 자료수집 및 기관간 협의 등 교류사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

### □ 주요골자

- 가. 자료수집, 방문단의 활동주선·안내, 유통망 연결, 시정 홍보활동 등을 명예 국제협력관의 주요 임무로 함(안 제2조).
- 나. 위촉대상을 한인(교민)회 간부, 상공인(무역업 및 기업체 임원 등), 기타 주재국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 함(안 제3조).
- 다. 대상인원은 지역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,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촉사유 발생시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함(안 제4조).
- 라. 명예국제협력관을 시단위행사에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통비, 체재비 등을 실비 변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- 마. 명예국제협력관에게 자료송부 및 통신료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
## 이천시조례 제 호

### 이천시해외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해외명예국제협력관(이하 "명예국제협력관"이라 한다)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①명예국제협력관은 대외 협력 및 통상의 증진을 위한 각종자료를 수집·분석하여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.

②명예국제협력관은 관내 통상협력관련 방문단의 활동주선, 안내 및 연락등 방문단의 현지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.

③명예국제협력관은 관내 생산유망품목의 현지홍보 및 판매방연결등의 역할을 수행한다.

④명예국제협력관은 국내외 각종 공사활동시 시정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.

제3조(위촉대상)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조인지역내 거주 교민으로서 통상협력분야 종사자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한인(교민)회 간부

2. 상공인(무역업, 기업체 임원)

3. 기타 주재국에서 사회적으로 뛰어나 있는자

제4조(위촉 및 해촉) ①시장은 제3조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.

②대상인원은 원칙적으로 지역별 1명으로 하되,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국제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의 해촉의사가 있거나 사망·질병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

2.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

3. 명예국제협력관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천시의 재정적 손실이나 명예에 손상을 입힌 때

4. 기타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5조 (품위유지)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된 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이천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초청등) 시장은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된 자를 시단위행사등에 초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통비, 체재비등을 실비 변상할 수 있다.

제7조(경비지원) 명예국제협력관에게 통상협력활동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료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四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